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54

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:이주환·김성원·김태흠

박덕흠 • 박성민 • 성일종

이명수 · 임이자 · 정진석

최승재 · 최춘식 · 태영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%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 조제6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4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| 제49조(기금의 사용) |
|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| |
| 다. | |
| 1. ~ 6. (생 략)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6의2.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 |
| | 연구·홍보 및 소방장비 보 |
| | 급에 관한 사업 |
| 7. ~ 11. (생 략) | 7. ~ 11. (현행과 같음) |